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위·수·탁 협약서

함양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위·수탁 협약서

제1조(목적 및 위·수탁 업무) 이 협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함양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이 협약서의 각 조 및 사업계획과 같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제2조(예산지급)

1. “공단”은 제1조에 따른 예산을 산출하여 “함양군”에게 제출 및 교부 신청한다.
2. “함양군”는 1항에 따라 “공단”이 제출한 예산을 편성 및 확보하고, “공단”이 교부 신청한 예산을 최대한 즉시 지급한다.
3. “공단”은 예산을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사업수행)

1. “공단”은 “함양군”에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공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및 별도인력 등을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3. “공단”은 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도급시킬 수 있다.
 - ① “공단”은 도급계약 체결시 “함양군”에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지방계약관계법령과 예산회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② “공단”은 도급계약자의 과업수행 및 비밀자료 외부유출 등에 대해 감독하고, 도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4. “함양군”은 필요시 택시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관련 안내, 홍보, 요청, 독려 등 “공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1. “공단”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공단”은 비밀자료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지 않는다.
3. “공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단”的 귀책사유로 인해 “○○시(군)”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지도·감독)

1. “함양군”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2. “함양군”은 “공단”에게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을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조사할 수 있다.
3. “함양군”은 “공단”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 제출)

1. “공단”은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 사업수행 결과를 “함양군”에게 제출하며, 관련서류는 자체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
2. “함양군”은 “공단”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한다.
3. “함양군”은 “공단”에게 제1항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공단”은 기한 내 반납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1.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②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기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2. 협약을 해지할 경우 60일 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문서로 통보한다.
3. 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제6조(사업수행 결과 제출)을 이행한다.

제8조(기술지식의 이용) “공단”은 이 협약에 따른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함양군”과 협의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및 해석, 합의관할) 이 협약의 변경사항 또는 해석 차이 발생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이 협약과 관련된 소송의 합의관할은 “함양군” 소재 법원으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함양군”와 “공단”의 직인 날인은 생략하고, 공문으로 갈음한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함양군”와 “공단”의 별도 합의 전까지 유효하다.

2021. 3. 1

함 양 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직인생략)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생략)